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1호
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('25.11.3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'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

연번	자치구	구역명(가칭)	위 치	면적(㎡)	권리산정기준일
1	용산구	-	용산동2가 1-597 일대	53,734	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2	용산구	-	이태원동 214-37 일대	66,986	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3	종로구	-	행촌동 210-2 일대	76,310	2025-09-26 (자치구 요청일)
4	마포구	-	합정동 444-12 일대	40,753	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5	은평구	-	녹번동 35-78 일대	20,320	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6	금천구	-	시흥동 1-1 일대	24,901	2025-08-22 (자치구 요청일)
7	구로구	-	구로동 739-7 일대	92,521	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
※ 면적은 참고용으로,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

2. 지정사유

-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3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만 기준이 적용되며,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기준은 자동 실효(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)

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5. 안내사항
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(☎02-2133-7236)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자치구	부서명	연락처	비고
용산구	재정비사업과	02-2199-7463	
종로구	도시개발과	02-2148-2682	
마포구	주택상생과	02-3153-9336	
은평구	정비사업신속추진과	02-351-7744	
금천구	주거정비과	02-2627-1558	
구로구	도시개발과	02-860-2964	